

■ 【별표 14】

**심의관련 비리감점** (제37조제3항과 관련)

1.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

감점사유	감점	감점기간
가. 심의위원 선정이후 직·간접 사전접촉	3	당해심의
나. 설계심의분과위원(중앙심의위원 포함) 위촉 이후 직·간접 사전설명	5	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
다.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, 연구,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	5	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
라.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소속직원(감점 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)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	15	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
마.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“건설공사”와 “건설기술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(면제처분도 포함) *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가 반영된 공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	10	과징금부과처분 확정일부터 2년

2. 감점 부과방법

- 가.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(또는 기술자문위원회)에서 의결하여 정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.
- 나.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.
- 다.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/2의 감점을 적용한다. 다만, 제1호 마목의 경우 해당행위를 한 업체에게만 적용한다.
- 라. 상관 등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접촉 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사전설명한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한다.
- 마. 위 '1.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'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,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.
- 바. 제1호의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.

- 사. 제1호 가~라목 관련 수사,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하고, 제1호 마목 관련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확정일부터 2년간 감점 조치한다.
- 아. 제1호 마목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입찰 참여자가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1심 판결 결정일로부터 감점 조치한다.
- 자. 제1호의 감점사항 관련하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- 차. 제1호 가목의 사전접촉과 나목의 사전설명에는 심의위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전화(유·무선)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, 방문, 구두, 우편(전자우편), 자료 전달 등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.

### 3. 감점 적용방법

- 가.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,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.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,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.
- 나.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- 다.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.
- 라.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.

### 4. 감점 취소

- 가.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(또는 기술자문위원회)에서 의결하여 정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.
- 나.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.